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9. 24 선고 2018가단619(본소), 2018가단22985(반소) 판결
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, 소유권이 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피고(반소원고) G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,김지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금정호

변론 종결 2019. 7. 16

판결 선고 2019. 9. 24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피고(반소원고)에게 영주시 H 대 12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4, 13, 12, 11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31㎡ 중 원고(반소피고) A, B은 각 6/22지분에 관하여, 원고(반소피고) C, D은 각 4/22지분에 관하여, 원고(반소피고) E, F은 각 1/22지분에 관하여 각 1998. 5. 6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소 청구취지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6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 1989. 6.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청구취지 : 주문 제2항과 같다(다만 "1998. 5. 5."는 "1998. 5. 6."의 오키로 본다).

이 유

1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 요지

원고들은 망 1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으로부터 영주시 H 대 12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상속받은 공유자들이다.

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시멘트 벽돌조기와지붕 단층주택 16㎡를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망인이 사망한 1989. 6.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들 소유 건물만이 존재하고 있고,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, 원고가 제출한 갑 제1내지 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2.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J이 영주시 K 토지(이하 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여 오던 중, 1972. 6. 25. 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서편에 위치한 와가 건물 1동(이하 '이 사건 원고들 건물'이라 한다) 및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부분을 매도하였고, 그 이후 1976. 10. 18. M에게 이 사건 원고들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다.
- 2)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72. 7. 6. 이 사건 토지와 영주시 N 대 200평(이후 661㎡로 단위 변경되었고, 이하 '이 사건 N 토지'라 한다)으로 분할되었다.
- 3) 피고는 1978. 5. 6. L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원고들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4, 13, 12, 11, 10, 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㎡(이하 '이 사건 ㉠부분'이라 한다) 및 ② 이 사건 N 토지를 모두 매수하였고, 그때부터 이 사건 ㉠부분을 점유하여 왔다.
- 4) 망인이 1978. 6. 21. M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들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고, 1978. 6. 22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1989. 6. 경 사망하였다.
- 5)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들이 있고, 그 상속분은 원고 A, B 각 6/22지분, 원고 C, D 각 4/22지분,

원고 E, F 각 1/22지분이다.

【인정근거】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)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가 1978. 5. 6. L으로부터 이 사건 ㉔부분을 매수하여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,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1998. 5. 6. 이 사건 ㉔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㉔부분 중 상속분에 따라 원고 A, B은 각 6/ 22지분에관하여,원고 C, D은 각 4/22지분에 관하여,원고 E,F은 각 1/22지분에 관하여 각1998. 5. 6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,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권형관

별지